

2026년 제1차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「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6년 제1차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4. 17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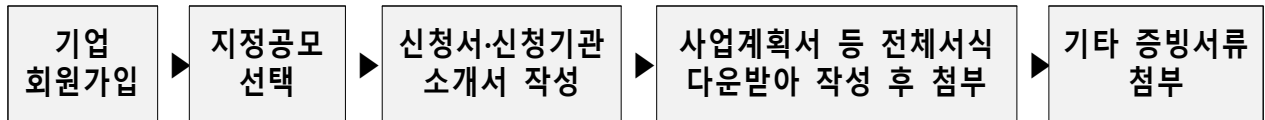
충청남도지사

1. 사업개요

- (사업명) 2026년 제1차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
- (지정기간) 지정일로부터 3년
 - 단, 마을기업, 농어촌공동체회사,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
- (지정규모)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정 규모 결정
- (지원내용)
 -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대출 용자 및 이자보전
 -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
 -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지원 등
 -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홍보 및 유통 판로지원 등

2. 신청개요

- (신청기간) 2026. 4. 17.(금) ~ 2026. 5. 6.(수) 18:00까지 / 20일간
- (신청방법) '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' 온라인 접수
- 웹주소: www.seis.or.kr 회원가입 후 '지정신청'에서 접수



※ 단,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하여 등록하며,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신청을 불인정하고,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

- (신청유형) 5가지 유형 ※ [붙임] 참고

- ① 사회서비스 제공형 :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30% 이상
- ② 일자리 제공형 :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% 이상
- ③ 지역사회 공헌형 : 인적물적 제공, 지역사회문제해결 등 3가지 유형의 지역사회 공헌형
- ④ 혼합형 :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% 이상
- ⑤ 창의·혁신형 : 도시재생, 친환경, 문화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

구 분	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	취약계층 고용	매출(수입 또는 지출)	비고	
① 사회서비스 제공형	30% 이상	-	-		
② 일자리제공형	-	30% 이상	-		
③ 지역사회 공헌형	가	20% (또는) 20%	-	시군 범위 내	
	나	-	-		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입 또는 지출이 40% 이상
	다	-	-		지역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하는 조직에 대해 컨설팅, 마케팅 등 수입 또는 지출이 40% 이상
④ 혼합형	20% (동시)	20%	-		
⑤ 기타(창의·혁신)형	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(사업의 실적을 계량화할 수 있는 경우는 동 유형으로 불인정)				

3. 신청자격 ※ [붙임] 참고

- (신청자격) 예비사회적기업 5가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·단체
 - ①조직형태, ②사회적 목적 실현, ③영업활동 수행, ④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, ⑤노동관계법 및 수행 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·교육이수 여부

※ ‘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’과 ‘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’ 중복 지정할 수 없음(2021년 지침개정)

○ (유의사항)

-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시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별도 기재 및 제출,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은 가점은 불인정하여 심사에 반영하지 않음
- 온라인 신청 서류(첨부포함)는 접수 마감일 이전에 완료된 서류만 인정
-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누락·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·군의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의 신청서 반려
-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, 「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에 의함
-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 비공개

4. 제출서류 ※ [서식] 참고

연번	서류명	필수여부	서식
1	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	필수	<별지 제1호>
2	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	필수	<별지 제2호>
3	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법인설립허가증, 대표자 이력서, 임대차 계약서 등 -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첨부	필수	

4	사회적 목적 실현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실적이 있는 경우	<별지 제2호의2> ~ <별지 제2호의6>
5	<p>유급근로자 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,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,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, 근로계약서 필요 - 사회적 목적 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(가)인 경우 유급근로자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등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필요 -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: 4대보험 가입자 명부,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급여이체내역, 급여명세서 등 	일자리 제공형 필수	<별지 제2호의7>
6	<p>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ex) 5월 신청 → 2,3,4월 제출, 4월 신청 → 1,2,3월 제출 (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) - 증빙서류 예시: 매출 계정별원장(필요시 증빙서류 첨부가능) ※ 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	필수	
7	<p>정관·규약(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*인 경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단·재단법인, 사회적협동조합,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재·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 허가 공문 제출 * 주식회사, 유한회사, 합자회사, 영농(어)조합법인, 농(어)업 회사법인, 「협동조합기본법」협동조합, 「민법」조합,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<p>※ 정관, 규약은 반드시 '공증'을 받아야 인정</p>	필수	
8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	필수	<별지 제6호>
9	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	필수	<별지 제2호의8>
10	<p>사회적기업 기본과정,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-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'소셜클래스' 메뉴에서 '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' 수강 → 이수 확인증 제출 - 지방자치단체,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,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'사회적기업아카데미' 수료증 대체 가능 (단, 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) 	필수	
11	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	해당사항 있는 경우	

5. 추진일정

추진내용	기 간	비 고
공고(도) 및 접수(시군)	'26. 4. 17.(금) ~ '26. 5. 6.(수)	신청기업 → 시·군
신청기업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	'26. 5. 11.(월) ~ '26. 5. 22.(금)	시·군, 고용관서, 지원기관 → 신청기업
전문가 심사위원회 개최 (발표심사)	'26. 6. 8.(월) ~ '26. 6. 12.(금) 中 1일	道 ↔ 시·군, 신청기업
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심의	'26. 6월 중	道
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고 및 알림	'26. 6월 중	道

※ 결과통보 : 도 홈페이지 선정공고 및 관할 소재지 시·군 통보

6. 지정 설명회 개최 ※ 설명회 종료

- (일 시) 2026. 3. 20.(금) 14:00 / 충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
- (참석대상)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
- (주요내용) 신청자격, 구비서류 안내,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시스템 사용법 등

7. 예비사회적기업 준수사항 및 취소사유

- (준수사항)
 - 지정요건 유지
 -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(지정 후 3개월 이내)
 - 사업보고서 제출(매년 5월말까지)
 - * 미제출시 불이익: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
 -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

○ (지정취소)

-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경우
 - ※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~500%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함
-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

8. 향후 심사계획

- (심사일자) 2026. 6. 8.(월) ~ 6. 12.(금) 중 1일 /충남도청(예정)
- (심사방법) 신청기업의 사업설명 후 심사위원 질의응답(발표심사)
- (주요 심사내용)
 -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
 -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한지 여부
 - 탄소중립 관련 사업 추진할 경우 가산점 부여(3점)
 - 충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입주(예정) 기업 가산점 부여(5점)
 - ※ 가산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, 신청 시 반드시 해당 항목을 기재하여야 하며,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심사 신청 시 미기재된 사항은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- ※ 혁신타운 입주 가점을 받은 기업 중 지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입주하거나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퇴실하는 경우 지정취소될 수 있습니다.
 - 「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 심사기준안 등 심사계획에 따라 지정

9. 문의처

-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육성팀(☎ 041-635-2214)
- 사회적경제 시군 담당 부서 및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

※ 문의 전화번호

구 분	기 관	전화번호
상담 및 컨설팅 (지원기관)	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	041-456-8132~4
시스템 문의 (www.seis.or.kr)	통합사업관리시스템 (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)	1661-4006

※ (접수) 시군 담당부서

담당부서 및 연락처					
기관	부 서	전화번호	기관	부 서	전화번호
천안시	일자리경제과	041)521-5612	금산군	경제과	041)750-3023
공주시	경제과	041)840-8314	부여군	경제교통과	041)830-2264
보령시	지역경제과	041)930-3722	서천군	경제진흥과	041)950-4120
아산시	일자리경제과	041)530-6133	청양군	사회적경제과	041)940-4074
서산시	일자리경제과	041)660-2590	홍성군	경제정책과	041)630-1353
논산시	지역경제과	041)746-6036	예산군	경제과	041)339-7283
계룡시	경제산업과	042)840-2494	태안군	경제진흥과	041)670-2708
당진시	기업육성과	041)350-4572	충청남도	경제정책과	041)635-2214

□ **신청자격**

○ 예비사회적기업 5가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·단체

① **조직형태**

- 민법상 법인·조합, 상법상 회사·합자조합
- 비영리 민간단체 등
 -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법인
 -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 -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 -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 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·미술관
 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·단체
 -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 - *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(어)조합법인,
 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(어)업회사법인 등

② **사회적 목적 실현**

-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(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)
-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
 - *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

- 단,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%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(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)

*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,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

【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】

- (1) **사회서비스제공형**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
 -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% 이상
- (2) **일자리제공형**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
 -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% 이상
- (3) **지역사회공헌형**: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
 -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(지역취약계층)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% 이상
 -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, 소외,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
 -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, 마케팅,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
- (4) **혼합형**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
 -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% 이상
- (5) **기타(창의·혁신)형**: 그 밖의 조직의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
 -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

③ 영업활동 수행

-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
 - *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,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
- 단,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
 - *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

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

-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

【세부지정요건】

- 동 요건은 상법상 회사합자조합과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(어)조합법인, 농(어)업회사법인, 일반 협동조합,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.
- 가. 상법에 따른 회사·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 -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(임금인상, 복리후생비, 성과급 등)
 -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
 -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
- 나.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.
- 다.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.
 - (1)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.
 - (2)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.
 -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.

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, 교육 이수

-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,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
-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

【세부지정요건】

-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,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
 -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
 - 적용기준: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(위반사항 해소 포함)로 판단

※ 단 아래와 같이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만 신청 가능

【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제한 사항】

-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(공고일)부터 1년간(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) 신청제한
 - 2023년도부터 적용, 지역형·부처형 포함
-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, (예비)사회적기업 인·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·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
 - *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
 -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
 -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
 -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
 -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, 사업내용, 임원·근로자 등 구성원,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
-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,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(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,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)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

□ 신청서 검토

○ (보완요구) 시·군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정하여 지체없이 보완요구

- ①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
- ② 기재사항 중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등

* 기한 내 미 보완 시 반려될 수 있음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제22조, 시행령 제25조

○ (신청서의 반려) 시·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

-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
- ②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
- ③ 반환을 요청한 경우

○ (부적격통보) 시·군은 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,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업에 ‘신청자격 부적격’ 통보

* [부적격 사례]

- 일자리제공형 신청기업이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
- 주된 사회적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
-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
-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등